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238호

- 2026년도 하반기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시험 -

추가합격자 및 합격자 등록 공고

2026년도 하반기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및 합격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추가합격자 명단 ▸ 총 1명

응시직종(직무)	응시번호	비고
실무사무원(검침)	250138	결원에 따른 추가합격자 선발

※ 응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응시번호'만으로 합격자를 발표함.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최종합격자의 채용(근로) 포기, 채용 결격사유 발생, 채용 후 취소, 퇴사 및 기존 인력의 의원면직·중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신속히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 단, 1년 내 동일 직종·직무에 대한 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26년도 하반기 채용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 합격자 등록 안내

가. 등록대상 : 추가합격자(1명)

나. 등록방법 : **별도 통보 예정**

다.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스테이플러 등으로 편철하지 않은 채로 제출(필요시 클립 사용)

① **최종합격자 등록서류 목록표** [서식 제1호]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제2호] 1부

③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서식 제3호] 1부 ※ 앞·뒤쪽 전부 작성

④ **공정채용 확인서** [서식 제4호] 1부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제5호] 1부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부서) 배치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실시

⑥ **주민등록표등본** 1부 **※ 2026. 11. 12.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⑦ **증명사진(3.5 × 4.5cm)**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

⑧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직장 제출용)**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로그인 → '건강모아' → '나의 건강관리' → '국가건강검진정보' →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 조회 → 제출처 기입(부산광역시청) → 인쇄

※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의 '검진판정일'이 채용연도 기준 최근 2년 내(2024년~2026년)인 결과가 확인되어야 하며, 미수검자는 즉시 수검 후 별도 제출

3 기타 유의사항

가. 채용을 포기하는 최종합격자는 채용포기 확인서[서식 제6호]를 전자메일(passionately@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합격자 등록 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채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합격자는 근무개시일부터 3개월 미만의 수습근무를 실시하며,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경우 부서배치 전 별도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별도 안내 예정)

라.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거나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채용 지침」 제2조에 따른 부정합격자의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1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무직이 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아동복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영유아보육법」등 개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채용 지침」

제2조(정의)

4. “채용비리”란 채용부서장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응시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그 밖의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지침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시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말한다.

5. “부정행위”란 본인 또는 본인과 관계가 있는 타인의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채용시험 중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부정합격자”란 제4호의 채용비리 또는 제5호의 부정행위로 인한 합격자를 말한다.

마. 최종합격자의 근무부서 및 배치일 등 근무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임.

붙임 1. 최종합격자 등록서류(서식 제1~5호) 각 1부(별첨).

2. 채용포기 확인서(서식 제6호) 1부(별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인사과 공무인력관리팀(☎051-888-11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